

안전진단전문기관

■ **업무내용**

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·터널·항만·댐·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의 물리적·기능적 위험요인 과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·측정·평가하여 보수·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

■ **등록기준**

1. 자본금

사업분야	자본금	※
토목 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)	1억원 이상	법인의 경우 재무제표, 증빙서류 필요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, 증빙서류 필요
건축 (건축분야)	1억원 이상	
종합	4억원 이상	

2. 기술능력

사업분야	기술능력
토목 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)	가. 토목.건축.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(토목분야 50% 이상) 나. 토목.건축.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(토목분야 60% 이상) 다. 토목.건축.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
건축 (건축분야)	가. 토목.건축.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(건축분야 50% 이상) 나. 토목.건축.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(건축분야 60% 이상) 다. 토목.건축.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
종합	가. 토목.건축.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8명 이상 (토목.건축분야 각각 25% 이상) 나. 토목.건축.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(토목.건축분야 각각 30% 이상) 다. 토목.건축.안전관리(건설안전 기술자격자)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

1.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다.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2 "건축사"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3.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시설 · 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장비 [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]	
공통	가. 균열폭측정기(7배율이상,라이트부착형) 나. 반발경도측정기(교정장치포함) 다. 초음파측정기(초음파 전달시간을 0.1μs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) 라. 철근탐사장비 마. 철근부식도측정장비(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) 바. 염분측정장비 사. 코어채취기 아. 도막(塗膜)두께측정장비(측정범위가 0.1mm 이하일 것) 자. 측량기[수준(水準)·각도·거리 측정용] 차.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) 자분(磁粉)탐상기(Magnetic Testing, MT) 2) 초음파시험기(Ultrasonic Testing, UT)
교량 및 터널	가.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.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. 내공변위측정기(정밀도가 0.01mm 이상일 것)
수리분야	가. 유독가스탐지기 나. 관로누수탐지기 다. 금속관탐지기
항만분야	유속계 (0.1m/sec ~ 3m/sec)
건축분야	가. 진동측정기 나. 정적 변형측정장치
종합분야	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※ 진단측정 장비는 「국가표준기본법」 및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검정·교정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국가표준기본법」 및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검정·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.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35일 이내 소요